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재건축 추진 주민들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하며 비용 모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시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걸렸던 시간을 단축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진단 비용부담에 관해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